

광주지방법원 2022. 8. 24 선고 2021나68819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 2022. 8. 24 선고 2021나68819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10. 6 선고 2021가단1579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등 종합법률

담당변호사 오수원

피고, 피항소인 1. B

2. C

변론종결 2022. 7. 13.

판결선고 2022. 8. 24.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10. 6. 선고 2021가단1579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A이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20. 2. 6. 한 상속포기를 취소한다. 원고가 A을 대위하여 제1심판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 1. 31. 접수 제4320호로 마친 2019. 12. 1.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제1심판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20. 2. 4. 접수 제22535호로 마친 2019. 12. 1.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각 유효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보완한 주장과 증거를 고려하더라도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정영하, 판사 황진희, 판사 김용신